이사회 운영 규정

제정 2020. 1. 6. (규정 제24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춘천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 이사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사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관련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하고, 이 규정에 정함이 없거나 그 적용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3조(구성) ① 이사회는 원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하며 이사의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4조(의장) 제3조에 의한 원장은 회의시 의장이 된다. 다만, 원장이 의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사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간사 등) ① 이사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이사회 소집 및 의결사항 통보에 관한 사항

2. 이사회 회의록 작성 및 관리

3. 기타 이사회 의사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6조(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분기별로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이사회는 의장 또는 다음 각 호의 요청에 따라 소집한다.

1.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목적을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3. 정관 제18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의거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③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이사는 부의할 안건을 의장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제2항에 의한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⑤ 의장이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안건을 명기하여 이사 및 감사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문서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으며, 회의 개최 전일까지 통지할 수 있다.

제7조(의결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문화원의 사업계획 및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정관 및 규정의 제정 또는 개정ㆍ폐지에 관한 사항

4. 조직,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5.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6.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에 관한 사항

7. 중요한 재산의 취득, 처분 및 임대차에 관한 사항

8. 소송 및 화해에 관한 사항

9. 기타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이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이사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그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본원과 이해가 상반되는 자에 관한 사항

제8조(회의 정족수 및 의결방법)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이사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결이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③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의결사항은 이사회에 회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의안이 경미하고 명백하여 이사회 소집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의 서면으로 동의를 얻어 의결할 수 있다.

④ 원장은 긴급을 요하는 사항으로서 이사회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 없이 이를 집행할 수 있다. 다만, 이사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 추인을 얻어야 한다.

⑤ 의안은 제안설명, 찬반토의, 표결의 순으로 처리하되 의장은 이 중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⑥ 표결방법은 구두표결을 원칙으로 하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⑦ 의안은 원안가결, 수정의결, 부결, 심의보류로 구분하여 의결하며, 의장은 토론 및 표결을 거쳐 이를 의결한다.

제9조(임직원의 출석) 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임직원을 출석요구하여 보고 또는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권한의 위임) ① 이사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위임장(별지 제1호 서식)을 이사회 개최 전까지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원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을 위임받아 처리한 경우에는 이사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부의절차) ① 이사회에 의안을 부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과 [별지 제2의 2호 서식]에 의한다.

② 간사는 의안의 접수순위에 따라 이사회 의사관리대장(별지 제3호 서식)에 등록하고 회의차수는 연도별로, 의안번호는 의결안건과 보고안건으로 구분하여 접수순위에 따라 부여하고 그 의안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개최 5일 전까지 이사회 구성원에게 이사회 소집통지서(별지 제4호 서식)와 함께 배부하여야 한다.

제12조(의안설명) 이사회에 제출된 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사무국장이 하며, 안건의 내용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하여야 한다. 다만, 사무국장의 유고시 또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실무자에게 설명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의견청취) 이사회는 의안심의에 필요한 경우 해당 업무의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4조(회의록 작성) 간사는 이사회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5조(회의록 등의 보관) 이사회의 회의록, 서면결의서(별지 제5호 서식) 및 부의원안은 사무국에서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부 칙 (2020. 1. 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개최된 이사회의 운영 등에 관해서는 이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  |
| --- |
| ■ 이사회 운영 규정 [별지 제1호 서식] |
|  |

위 임 장

본인은 20○○년도 춘천문화원 제0차 이사회에 직접 참석이 어려우므로, 춘천문화원 정관 제27조(소집), 제29조(의결정족수) 규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의결권을 위임합니다.

- 아 래 -

<의안>

제00호 안건명

<위임방법>

위 의안에 대하여, 의결권을 춘천문화원 원장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자 (서명)

|  |
| --- |
| ■ 이사회 운영 규정 [별지 제2호 서식] |
|  |

|  |  |  |  |
| --- | --- | --- | --- |
|  |  |  | 의  결  안  건 |
| 의 안 번 호 | 제 호 |  |
| 의 결  년 월 일 | 년 월 일 |  |
|  |  |  |

|  |
| --- |
| 안 건 명 |

|  |  |
| --- | --- |
| 제 안 자 | 춘 천 문 화 원  원장 ○ ○ ○ |
| 제안 연 월 일 | 년 월 일 |

|  |
| --- |
| ■ 이사회 운영 규정 [별지 제2호의2 서식] |
|  |

|  |
| --- |
| 안 건 명 |

1. 의결주문

2. 제안이유

3. 주요내용

4. 참고사항

|  |
| --- |
| ■ 이사회 운영 규정 [별지 제3호 서식] |
|  |

이사회 의사관리대장

|  |  |  |  |  |
| --- | --- | --- | --- | --- |
| 회의  차수 | 일 자 | 의안번호 | 안건명 | 의결(보고)내용 |
|  |  |  |  |  |

|  |
| --- |
| ■ 이사회 운영 규정 [별지 제4호 서식] |
|  |

이사회 소집통보서

수신 : 이사 제위

년도 제 차 춘천문화원 이사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일 시 : 년 월 일 시 분

2. 장 소 :

3. 부의안건 :

4. 참고사항 :

년 월 일

춘천문화원장

|  |
| --- |
| ■ 이사회 운영 규정 [별지 제5호 서식] |
|  |

년도 제 차 춘천문화원 이사회 서면결의서

춘천문화원 정관 제29조(의결정족수), 이사회 운영규정 제7조(회의 정족수 및 의결방법)에 의한 제00차 이사회 상정안건에 대하여 본인의 의사를 다음과 같이 표시합니다.

|  |  |  |  |
| --- | --- | --- | --- |
| 안 건 명 | 서면결의 | | 비 고 |
| 可 | 否 |
| 의결안건 제0호  (안건명) |  |  |  |

상정 안건에 대하여 위와 같이 서면결의합니다.

년 월 일

이 사 (인)